

#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291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0년 2월 26일  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동 조례안 제5조제2항은 학교시설 사용신청자 단체 중 학생 및 해당 자치구 주민 또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우선하여 학교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 
  
우선 사용 대상이 되는 단체에 대한 기준이 없는바,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해당 학교 학생 또는 해당 자치구 주민의 구성 비율이 과반 이상일 경우 우선 사용하도록 함(안 제5조제2항).

## 3. 참고사항 : 없음

#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**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**

안 제5조제2항 중 “해당 학교 학생 및 해당 자치구 주민 또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가”를 “해당 학교 학생 또는 해당 자치구 주민의 수의 비율이 과반 이상으로 구성된 사용신청자가”로 한다.

##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5조(사용허가 신청) ① (생 략) ②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<u>학교장이</u> 추천 등으로 정할 수 있다.	제5조(사용허가 신청) ① (생 략) ②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<u>학교장이 해당 학교 학생 및 해당 자치구 주민 또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그 밖에는</u> 추천 등으로 정할 수 있다.	제5조(사용허가 신청) ① (생 략) ②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<u>학교장이 해당 학교 학생 또는 해당 자치구 주민의 수의 비율이 과반 이상으로 구성된 사용신청자가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그 밖에는</u> 추천 등으로 정할 수 있다.

##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학교장이 해당 학교 학생 또는 해당 자치구 주민의 수의 비율이 과반 이상으로 구성된 사용신청자가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추첨 등으로 정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사용허가 신청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 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<u>학교장이</u> 추천 등으로 정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사용허가 신청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 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<u>학교장이 해당 학교 학생 또는 해당 자치구 주민의 수의 비율이 과반 이상으로 구성된 사용신청자가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그 밖에는</u> 추천 등으로 정할 수 있다.</p>